

모든 계약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인지세법 제8조 제1항)하여야 하며, 납부지연 또는 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본 **세액의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인지 구입 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 주십시오.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기재금액	비고
부동산 분양계약서	계약서 작성일	분양대금(총 공급대금)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분양권 전매계약서	계약서 작성일	실제 거래가(분양가+프리미엄)	

※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가산세

기간	가산세
납부기간이 지난후 (3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 기간별 최대 300% 부과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 “21.1.1부터 적용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sestamp.or.kr), 우체국, 은행

과세대상	온라인	온프라인
구입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 은행
구입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 매수 : 1매 결제(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출력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인지세 납부 -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 매수 : 1매 결제(현금납부만 가능) 전자수입인지 발급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분양권 전매계약서 역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한 때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여러 회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매 시 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명의변경 시 증여계약서 작성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